

위험성평가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문서번호 RA-20260901 | 작성일 2026년 09월 01일

3 단위작업 수	3 개선필요(위험성 9점↑)	16 최고 위험성 (매우 높음)	12 평균 위험성
-------------	--------------------	----------------------	--------------

1. 평가 개요

평가 대상	한빛건설(주) 행복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행복지구 3블록 (지상 15층·지하 2층))	평가 기법	위험성 추정법 (가능성 × 중대성, 5×5)
평가 구분	□ 최초 □ 정기 □ 수시 (해당란 체크)	평가자(작성)	박현장 안전관리자
평가 일자	2026년 09월 01일	재평가 예정	2027년 09월 01일 (정기 1년)
평가 범위	단위작업 3건	평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6호

2. 현장 정보

현장명	한빛건설(주) 행복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관리자	박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지	행복지구 3블록 (지상 15층·지하 2층)	연락처	현장사무실 205
근로자수	48	교대근무	주간 1교대

3. 위험성 결정 기준

위험성 = 가능성(1~5) × 중대성(1~5) — 아래 매트릭스의 점수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가능성 \ 중대성	1	2	3	4	5
5	5	10	15	20	25
4	4	8	12	16	20
3	3	6	9	12	15
2	2	4	6	8	10
1	1	2	3	4	5

등급	점수	판단	조치 기준
V	16~25	허용 불가	즉시 작업중지 또는 긴급 개선
IV	9~15	허용 불가	개선대책 수립·시행(우선순위)
III	6~8	조건부 허용	현 조치 유지·추가 개선 검토
II	3~5	허용 가능	현 안전보건조치 유지
I	1~2	허용 가능	현 안전보건조치 유지

4. 위험성평가 결과

※ 각 작업의 현장 사진은 가상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예시 이미지입니다. 실제 평가에서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십시오.

[작업 1] 외부 강관비계 설치·해체 위험성 16점 (V·매우 높음) → 개선 후 목표 4점 (낮음)

작업 내용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를 조립하고, 작업발판·안전난간을 설치한 뒤 공정 종료 후 해체하는 작업. 지상 2층 높이부터 최고 15층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현장 사진	 외부 강관비계 —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사용 설비·도구	강관·클램프, 작업발판, 안전난간, 이동식 크레인(자재 양중)
취급 물질	강관 파이프(1본 약 15~20kg), 작업발판, 벽이음 철물
착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전체식 벨트), 안전화, 안전장갑
선택 위험요소	[1.6] 추락위험 부분 (개구부 등) [1.3] 기계의 낙하·비래·전도·붕괴 위험 [5.7] 중량물 취급작업 [근골] [6.4] 주변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1.6] 비계 조립·해체 중 작업발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거나 해체로 제거된 구간에서 추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안전대를 걸 지지로프가 선행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	---

	추락 방호가 없는 상태가 된다. [1.3] 해체한 강관·클램프·발판이 하부로 떨어지면 통행 중인 다른 공정 근로자가 낙하물에 가격당할 위험이 있다. [5.7] 강관 1본이 15~20kg으로 이를 반복 인양·운반하면서 요추·어깨에 누적 부담이 발생한다. [6.4] 하부에서 골조·설비 등 다른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어 상하 동시작업으로 인한 낙하물 위험이 커진다. ▶ 종합: 추락 방호가 확보되기 전 구간에서의 조립·해체가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본 현장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작업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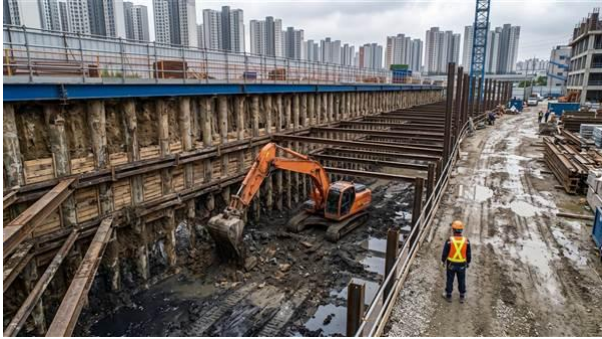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적용 중: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PPE) 지급·착용, 안전작업절차서/작업표준 비치, 정기 안전점검·순회점검, 위험·경고 표지 부착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고 있으나, 해체 구간에서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지지로프가 항상 선행 설치되지는 않고 있음.
근로자 의견	• 이강재: 위험 “해체할 때는 발판을 하나씩 걸어내면서 내려와야 해서 디딜 곳이 줄어드는 순간이 제일 불안하다” / 개선 “해체 구간 아래쪽 통행을 확실히 막아주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지지로프를 먼저 설치해 달라”
위험성 판정	개선 전 $4 \times 4 = 16$점 [V·매우 높음 (허용 불가)] → 개선 후 목표 $1 \times 4 = 4$점 [II·낮음] ※ 개선 후 목표는 관리 기준값이며, 개선대책 시행 후 재평가로 확정합니다.

개선대책	■ 공학적 개선 조립·해체 구간마다 안전대 체결용 수평 지지로프(생명줄)를 작업에 앞서 먼저 설치하고, 해체는 지지로프를 마지막에 제거하는 순서로 고정한다. 작업발판은 틈 없이 깔고 안전난간·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하부에는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을 설치한다. ■ 관리적 개선 비계 조립·해체 시간대에는 하부 통행·동시작업을 전면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한다. 작업 전 벽이음 상태·발판 고정 상태를 점검표로 확인하고, 강풍·강우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기준을 명문화한다. (점검 — 현재 적용 중, 현행 유지 권장) 비계 조립·해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순서와 인원 배치를 직접 통제한다. ■ 작업자 행동 이동 중에도 안전대 고리를 항상 지지로프에 체결하고, 두 지점 이동 시 이중 후크를 교대로 걸어 무방호 순간을 만들지 않는다. 해체 자재는 던지지 말고 반드시 인양장비나 자재운반통을 이용해 내린다.
------	---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안전난간·안전방망·안전대 부착설비), 비계의 조립·해체 및 점검에 관한 기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

[작업 2] 터파기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위험성 12점 (IV·높음) → 개선 후 목표 4점 (낮음)

작업 내용	지하 2층 구조물 시공을 위해 백호로 터파기 굴착을 진행하고, 굴착면 붕괴를 막기 위해 H-파일·토류판 방식의 흙막이 지보공을 단계별로 설치하는 작업
-------	--

현장 사진	 터파기 굴착부 — H-파일·토류판 흙막이와 버팀보, 굴착기 작업 반경
사용 설비·도구	백호(굴착기), 크롤러 크레인, H-파일·토류판, 버팀보
취급 물질	굴착 토사, H-형강, 토류판
착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고시인성 안전조끼
선택 위험요소	[1.3] 기계의 낙하·비래·전도·붕괴 위험 [1.4] 충돌위험 부분 [1.6] 추락위험 부분 (개구부 등) [5.1] 소음
유해위험요인	[1.3] 흙막이 지보공 설치가 굴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배면 지하수·집중호우로 토압이 증가하면 굴착면이 붕괴해 작업자가 매몰될 수 있다. [1.4] 굴착기 선회 반경과 근로자 통행 동선이 겹쳐 협착·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덤프트럭 후진 시 사각지대도 함께 존재한다. [1.6] 굴착 단부·개구부에 방호울이 없으면 근로자나 자재가 굴착부로 추락할 수 있다. [5.1] 굴착기·항타 장비의 소음이 지속되어 신호 전달이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소음성 난청 위험이 있다. ▶ 종합: 붕괴는 발생 시 매몰로 이어져 중대재해가 되고, 중장비와 근로자의 동선 혼재가 상시적인 협착 위험을 만든다.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적용 중: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PPE) 지급·착용, 안전작업절차서/작업표준 비치, 정기 안전점검·순회점검, 위험·경고 표지 부착, 방호장치·안전장치 설치 굴착 계획과 흙막이 설치 순서를 수립해 운영 중이나, 장비 작업 반경 출입통제는 신호수 배치에만 의존하고 있음.
근로자 의견	• 최기중: 위험 “굴착기가 선회할 때 뒤쪽이 잘 안 보이는지 가까이 지나가면 아찔할 때가 있다” / 개선 “장비 작업 반경에 아예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치고 신호수를 상시 배치해 달라”
위험성 판정	개선 전 $3 \times 4 = 12\text{점}$ [IV·높음 (허용 불가)] → 개선 후 목표 $1 \times 4 = 4\text{점}$ [II·낮음] ※ 개선 후 목표는 관리 기준값이며, 개선대책 시행 후 재평가로 확정합니다.
개선대책	■ 공학적 개선

	굴착기 작업 반경 전체에 이동식 방호울(바리케이드)을 설치해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진입할 수 없게 하고, 장비에는 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굴착 단부 전 구간에 안전난간과 방호울을 설치하고, 굴착면에는 계측기(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를 배치해 변위를 상시 관리한다. ■ 관리적 개선 굴착 심도별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선행하는 시공 순서를 준수하고, 굴착 계획 대비 실제 진도를 매일 대조한다. 집중호우·해빙기에는 굴착면·배수 상태를 별도 점검하고, 계측값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중장비 작업 구간에 신호수를 전담 배치하고, 장비 운전원과 신호수 간 수신호·무전 규약을 통일한다. (신호수 배치 — 현재 적용 중, 현행 유지 권장) ■ 작업자 행동 장비 작업 반경 내로는 어떤 경우에도 진입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운전원과 눈을 맞추고 정지를 확인한 뒤 이동한다. 굴착면에 균열·용수·토사 유출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고한다.
--	--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굴착작업 시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위험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유도자 배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

[작업 3]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위험성 9점 (Ⅳ·높음) → 개선 후 목표 3점 (낮음)

작업 내용	슬래브·벽체 거푸집에 철근을 운반·배근하고 결속한 뒤, 콘크리트 펌프카로 타설하고 진동다짐기로 다짐하는 작업
현장 사진	 슬래브 철근 배근 — 포그린 자세의 결속 작업과 콘크리트 펌프카 붐

사용 설비·도구	콘크리트 펌프카, 진동다짐기, 철근 절곡·절단기, 전동공구
취급 물질	이형철근(D13~D25), 결속선, 레미콘
착용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방진마스크, 보안경
선택 위험요소	[5.7] 중량물 취급작업 [근골] [5.9] 불안정한 자세 [근골] [2.1] 감전 (안전전압 초과)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찰림)

유해위험요인	[5.7] 이형철근 다발을 어깨로 운반하고 배근 위치까지 반복 이동하면서 요추·어깨에 과도한 하중이 반복적으로 걸린다. [5.9] 슬래브 배근·결속 작업은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이루어져 요추 부담이 누적된다. [2.1] 물기가 많은 타설 환경에서 진동다짐기·전동공구의 전선 피복 손상이나 접지 불량이라면 감전될 위험이 있다. [1.2] 절단된 철근 단부와 결속선 끝에 베이거나 찔릴 위험이 있으며, 상부로 돌출된 철근은 전도 시 관통상 위험이 된다. ▶ 종합: 근골격계 부담이 상시적으로 누적되는 작업이며, 습윤 환경에서의 전기기계 사용이 감전 위험을 함께 만든다.
--------	---

현재 안전보건조치	✓ 현재 적용 중: 안전보건교육 실시, 개인보호구(PPE) 지급·착용, 안전작업절차서/작업표준 비치, 건강검진·작업환경측정 절연장갑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동공구 전선 상태 점검은 작업 전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고 있음.
근로자 의견	• 김철근: 위험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르다 보면 하루 끝에는 허리가 빠근하다” / 개선 “철근을 배근 위치 가까이까지 장비로 옮겨주면 사람이 메고 가는 거리가 줄어들 것 같다”
위험성 판정	개선 전 $3 \times 3 = 9$점 [Ⅳ·높음 (허용 불가)] → 개선 후 목표 $1 \times 3 = 3$점 [Ⅱ·낮음] ※ 개선 후 목표는 관리 기준값이며, 개선대책 시행 후 재평가로 확정합니다.

개선대책	■ 공학적 개선 철근은 이동식 크레인·자재운반대차로 배근 위치 인근까지 운반해 사람이 어깨로 메고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한다. 타설 구간 전원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분전반에서만 인출하고, 전동공구는 이중절연 제품으로 교체하며 전선은 바닥 물기와 닿지 않도록 가설한다. 돌출 철근에는 캡을 씌워 관통상을 예방한다. ■ 관리적 개선 중량물 취급 기준을 정해 2인 1조 운반 대상을 명시하고, 배근 작업은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도록 순환 배치한다. 전동공구·전선 피복 상태를 작업 전 점검표로 확인하고 손상품은 즉시 반출한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 건강면담을 운영한다. (건강검진 — 현재 적용 중, 현행 유지 권장) ■ 작업자 행동 철근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 들며, 무리한 중량은 반드시 동료와 분담한다. 젖은 손이나 물이 고인 자리에서는 전동공구를 조작하지 않는다.
------	--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누전차단기 접속·접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

5. 종합의견

■ 현장 사진 위험요인 분석

■ [외부 강관비계 설치·해체] 사진 판독 위험도: 상

- 작업발판 일부 구간에 틈이 있어 자재·공구가 하부로 떨어질 수 있음
- 안전대를 체결할 수평 지지로프(생명줄)가 확인되지 않음
- 안전방망이 일부 구간만 설치되어 있고 찢어진 곳이 보임
- 발끝막이판(toe board)이 없는 구간이 있어 낙하물 위험이 큼

즉시 조치: 조립·해체 구간에 안전대 체결용 수평 지지로프를 먼저 설치하고, 그 전까지 해당 구간 작업을 중지하십시오.

개선 제안:

- 작업발판을 틈 없이 깔고 발끝막이판을 전 구간에 설치
- 손상된 안전방망 교체 및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추가 설치
- 비계 조립·해체 시간대에는 하부 통행을 통제하고 유도자 배치

■ [터파기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사진 판독 위험도: 상

- 굴착기 선회 반경과 근로자 통행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굴착면 하부에 물이 고여 있어 배면 지하수·토압 증가가 우려됨
- 흙막이 배면 토사가 일부 노출되어 있고 토류판 사이 틈이 보임
- 굴착 단부 방호울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음

즉시 조치: 굴착기 작업 반경 전체에 이동식 방호울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전담 배치하십시오.

개선 제안:

- 굴착부 배수 처리 및 계측기(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 설치로 변위 상시 관리
- 굴착 단부 전 구간에 안전난간·방호울 연속 설치
- 장비에 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를 설치해 사각지대 해소

■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사진 판독 위험도: 중

- 전 작업자가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장시간 계속 작업 중
- 배근된 철근 위를 밟고 이동해 발이 빠지거나 미끄러질 위험
- 펌프카 붐 아래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붐 낙하·타설물 비산 위험
-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이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음

즉시 조치: 펌프카 붐 하부에는 작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선을 설치하고 신호를 통일하십시오.

개선 제안:

- 철근 위 이동 통로에 통로용 발판(켓워크) 설치
- 계속 작업은 일정 시간마다 순환 배치해 쪼그린 자세 지속을 분산
-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 연속 설치 및 타설 전 점검 의무화

■ 종합 개선의견

■ 단위작업별 위험성 평가 결과

- 외부 강관비계 설치·해체: 가능성 4 × 중대성 4 = 위험성 16점 [매우 높음 (허용 불가)]
- 터파기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가능성 3 × 중대성 4 = 위험성 12점 [높음 (허용 불가)]
-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가능성 3 × 중대성 3 = 위험성 9점 [높음 (허용 불가)]

■ 위험성 수준 기준

- 16~25점: 매우 높음 — 즉각 작업중지 또는 긴급 개선 필요 (허용 불가)
- 9~15점: 높음 — 우선 개선대책 수립·시행 필요 (허용 불가)
- 6~8점: 보통 — 현 조치 유지, 추가 개선 검토 (조건부 허용)
- 3~5점: 낮음 — 현 안전보건조치 유지 (허용 가능)
- 1~2점: 매우 낮음 — 현 안전보건조치 유지 (허용 가능)

■ 개선 필요 작업 (위험성 9점 이상)

[외부 강관비계 설치·해체] 위험성 16점 — 즉시 작업중지 또는 긴급 개선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개선대책:

■ 공학적 개선

조립·해체 구간마다 안전대 체결용 수평 지지로프(생명줄)를 작업에 앞서 먼저 설치하고, 해체는 지지로프를 마지막에 제거하는 순서로 고정한다.

작업발판은 틈 없이 깔고 안전난간·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하부에는 낙하물 방지망과 방호선반을 설치한다.

■ 관리적 개선

비계 조립·해체 시간대에는 하부 통행·동시작업을 전면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한다.

작업 전 벽이음 상태·발판 고정 상태를 점검표로 확인하고, 강풍·강우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기준을 명문화한다. (점검 — 현재 적용 중, 현행 유지 권장)

비계 조립·해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순서와 인원 배치를 직접 통제한다.

■ 작업자 행동

이동 중에도 안전대 고리를 항상 지지로프에 체결하고, 두 지점 이동 시 이중 후크를 교대로 걸어 무방호 순간을 만들지 않는다.

해체 자재는 던지지 말고 반드시 인양장비나 자재운반통을 이용해 내린다.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안전난간·안전방망·안전대 부착설비), 비계의 조립·해체 및 점검에 관한 기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터파기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위험성 12점 — 허용 불가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개선대책:

■ 공학적 개선

굴착기 작업 반경 전체에 이동식 방호울(바리케이드)을 설치해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진입할 수 없게 하고, 장비에는 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굴착 단부 전 구간에 안전난간과 방호울을 설치하고, 굴착면에는 계측기(지중경사계·지하수위계)를 배치해 변위를 상시 관리한다.

■ 관리적 개선

굴착 심도별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를 선행하는 시공 순서를 준수하고, 굴착 계획 대비 실제 진도를 매일 대조한다.

집중호우·해빙기에는 굴착면·배수 상태를 별도 점검하고, 계측값이 관리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중장비 작업 구간에 신호수를 전담 배치하고, 장비 운전원과 신호수 간 수신호·무전 규약을 통일한다. (신호수 배치 — 현재 적용 중, 현행 유지 권장)

■ 작업자 행동

장비 작업 반경 내로는 어떤 경우에도 진입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운전원과 눈을 맞추고 정지를 확인한 뒤 이동한다.

굴착면에 균열·용수·토사 유출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고한다.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굴착작업 시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흙막이 지보공의 붕괴 위험 방지,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유도자 배치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위험성 9점 — 허용 불가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개선대책:

■ 공학적 개선

철근은 이동식 크레인·자재운반대차로 배근 위치 인근까지 운반해 사람이 어깨로 메고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한다.

타설 구간 전원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분전반에서만 인출하고, 전동공구는 이중절연 제품으로 교체하며 전선은 바닥 물기와 닿지 않도록 가설한다.

돌출 철근에는 캡을 씌워 관통상을 예방한다.

■ 관리적 개선

중량물 취급 기준을 정해 2인 1조 운반 대상을 명시하고, 배근 작업은 일정 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도록 순환 배치한다.

전동공구·전선 피복 상태를 작업 전 점검표로 확인하고 손상품은 즉시 반출한다.

근골격계 증상 호소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 건강면담을 운영한다. (건강검진 — 현재 적용 중, 현행 유지 권장)

■ 작업자 행동

철근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 들며, 무리한 중량은 반드시 동료와 분담한다.

젖은 손이나 물이 고인 자리에서는 전동공구를 조작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근골격계부당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전기 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누전차단기 접속·접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 아차사고 발생현황 및 재발방지

- [외부 강관비계 설치·해체] 해체 중 클램프를 푼 강관이 손에서 미끄러져 아래층 통로 쪽으로 떨어질 뻔함
→ 아차사고는 중대재해의 전조입니다. 원인을 즉시 파악하고 동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현장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 [터파기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굴착기 선회 반경 안으로 근로자가 들어가 신호수가 급히 정지 신호를 보냄
→ 아차사고는 중대재해의 전조입니다. 원인을 즉시 파악하고 동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현장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타설 중 물기 있는 바닥에서 진동다짐기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을 뒤늦게 발견함
→ 아차사고는 중대재해의 전조입니다. 원인을 즉시 파악하고 동종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현장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 작업 특이사항

- [외부 강관비계 설치·해체] 해체 작업 시 하부에 다른 공정 작업자가 통행하는 경우가 있어 낙하물 위험이 큼
- [터파기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현장 진입로가 좁아 굴착기와 덤프트럭, 근로자 동선이 겹치는 구간이 있음
-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타설일에는 인원과 장비가 한꺼번에 몰려 통로 확보가 어려움

6. 개선대책 이행관리

위험성 6점 이상(조건부 허용·허용 불가) 작업의 개선대책 이행을 관리합니다. 담당자·완료 예정일·완료 확인란은 현장에서 작성하십시오.

번호	단위작업	위험성	핵심 개선대책	담당자	완료 예정일	완료 확인
1	외부 강관비계 설치·해체	16점	조립·해체 구간마다 안전대 체결용 수평 지지로프(생명줄)를 작업에 앞서 먼저 설치하고, 해체는 지지로프를 마지막에 제거하는 순서로 고정한다. - 작업발판은 틈 없...			
2	터파기 굴착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12점	굴착기 작업 반경 전체에 이동식 방호울(바리케이드)을 설치해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진입할 수 없게 하고, 장비에는 후방영상장치·경보장치를			

번호	단위작업	위험성	핵심 개선대책	담당자	완료 예정일	완료 확인
			설치한다. - 굴착 단부 ...			
3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9점	철근은 이동식 크레인·자재운반대차로 배근 위치 인근까지 운반해 사람이 어깨로 메고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한다. - 타설 구간 전원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분전반에서...			

7.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근로자 참여 방법	□ 순회점검 □ 설문조사 □ 인터뷰·면담 □ 회의(TBM 등) □ 기타()
결과 공유 방법	□ 안전보건교육 □ 설명회 □ 게시 □ 서면·전자적 방법
공유 내용	실시 일정,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026.6.1. 개정 시행 —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 의무)

8. 확인 및 서명

본 위험성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구분	성명 (직위)	서명
참여근로자	이강재	
	최기중	
	김철근	
관리자	박현장 안전관리자 (한빛건설(주) 행복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본 보고서는 ergo-C 위험성평가 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I 제안 내용은 평가자 검토를 거쳐 확정해야 하며, 최종 위험성 결정 책임은 사업주·평가자에게 있습니다.